

직무대리 규정

□ 제정 : 199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대학, 대학원 및 본부 행정부서의 장이 출장 또는 사고시에 대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 부서 대리서열) 각 부서의 장이 유고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학, 대학원의 장이 유고시에는 학과 설치순의 수석과장이 대리
2. 부서의 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대리
3. 과장이 유고시에는 과장대리 또는 선임 직원이 대리

제3조(사후조치) 이 규정에 따라 대리한 자는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 후결 또는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리와 책임) 이 규정에 따라 대리한 자와 그 상사인 피대리자는 대리를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본교 행정상 위임전결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설기관 등) 모든 부설 및 부속기관도 이 규정에 준하여 대리 직무를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